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9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김기웅 · 김기현
서천호 · 구자근 · 김석기
이종배 · 조은희 · 이성권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·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.

다만,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,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

이에 현행법과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,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,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신설하고, 잠정조치 제4호(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)의 기간을 기본 2개월 연장하며,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간 범위를 상향함(안 제9조 및 제11조).
- 나.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(안 제20조 신설).
- 다.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,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사법경찰관이 청구의 주체로 규정되었으므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·변경·연장 등의 조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11조).
- 라.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중 “신청”을 “청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”를 “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”를 “지방법원 판사”로 한다.

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”를 “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청구 또는 그 신청을”을 “청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사는”을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

제5항 중 “검사”를 “관할경찰관서의 장, 검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“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”를 “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 한정하여 각 3개월”을 “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는 두 차례만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

6.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

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을 행한 상담소 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관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⑨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.

⑩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스토킹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⑪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, 요양시설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”을 “관할경찰관서의 장, 검사와 피해자, 스토킹행위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검

사”를 “관할경찰관서의 장, 검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비용의 부담) 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스토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
② 관사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(豫納)을 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, 청구 및 지급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벌칙)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스토킹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,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,

제11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
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<u>신청</u>)	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<u>청구</u>)
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<u>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 <u><후단 신설></u>	① ----- ----- <u>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u><삭 제></u>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.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사법경찰관은 <u>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.</u>	④ ----- <u>지방법원 판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⑤ (생 략)

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,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,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환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잠정조치의 청구) 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청구를-----

-----.

<삭 제>

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-----

-----.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) ① -----

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,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⑦ 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·제3호 및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

6.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관할경찰관서의 장, 검사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제4호부터 제6호에
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-----
--.

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(잠정조치의 변경 등) ① ~

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는 두 차례만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-----
-----.

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을 행한 상담소 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⑨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스토킹 행위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.

⑩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스토킹 행위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⑪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, 요양시설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잠정조치의 변경 등) ① ~

③ (생략)

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,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.

1. 검사,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, 그 법정대리인: 취소,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

2. 3. (생략)

⑤ 잠정조치 결정(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.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)은 스톡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 <후단 신설>

<신 설>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_____

_____관
_____할경찰관서의 장, 검사와 피해자,
_____스트킹 행위자 _____
_____.

1. 관할경찰관서의 장, 검사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이 경
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취지를
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
야 한다.

제11조의2(비용의 부담) ① 제9조제
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
을 받은 스톡킹행위자는 위탁 또

<u><신 설></u> <u>제20조(벌칙)</u> (생략)	<u>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스토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</u> <u>② 관사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(豫納)을 명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, 청구 및 지급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</u> <u>제20조(벌칙)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스토킹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<u>제21조(벌칙) (현행 제20조와 같음)</u>
---	--